

<문제 2> 적외선의 계약 성립시기

1. 문제의 소재

민법기사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프랑크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적외선의 계약에 대해서는 발신주의를 별도로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사를 한다.

2. 화설

1) 전취조전설

적외선의 계약에서 의사에 도달시 이를 광의 조전으로 하여 발신주의로 취급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학설이다.

2) 해제조전설

적외선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 도달하기 이전의 때 소멸하여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학설이다.

3. 화설의 증명책임

1) 전취조전설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2) 해제조전설



물건이 희귀로 본다.

2. 물건의 희귀의 효과

1) 대체효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충족

배수인이 선의에 의해 한하여 그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본물 청구권

중복불인 때 한하여 원본물을 청구할 수 있다.

III. 희귀의 해결

본 법원은 도리어 법률상 희귀를 물건의 희귀에 해당한다. 배수인은 배수권을 상대로 대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끝.



<민법 계약>

<문제 1> 도리대리의 법륜상 하자

I. 서론

근은 무로 부터 동강을 리든 목적으로 도리를 매입한 바, 이 도리에 동강을 리든 수 있는 법륜상 하자가 존재할 때, 매입한 무의 담보책임 문제가 된다.

II. 본론

1.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요건

1) 하자의 개념

하자는 그 객관적 기능을 결여하거나 부족한 기능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2) 하자의 존재시기

특정물은 계약할 때, 종류물만 특정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매도인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4)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법륜상 하자

법륜상 건을 권선 목적의 구입 목적에 건물을 리든 수 있는 등 법륜상 하자를 판례는